

광주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8가단1069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0. 3. 20.

판결 선고 2020.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세종시에 있는 D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하되, 실제 공사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수행하기 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15.경 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경 F로부터 선급금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13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한편 E은 피고가 대표자인 G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고 자재납품권을 준다고하면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급자 G(피고가대표자), 공급받는 자 원고, 작성일 2016. 6. 29., 공급가액 3,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 4.경 E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F로부터 받은 선급금중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그중 E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403만원과 부가세 327만 원을 제외한 2,870만 원을 E의 이사라는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목재 및 시스템 마루에 관한 대금 견적서를 받고 2016. 7. 4.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는 데도 피고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위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E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3,6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품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돈을 송금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송금받은 돈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와 E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일 뿐이다.

(3)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